

농림축산식품부

시 정 요 구

제 목 국고보조금 지원 시설물에 대한 담보 설정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횡성군, 평창군, 양구군, 인제군

내 용

강원도에서는 FTA, DDA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생산성 향상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등기권 설정이 가능한 농업보조시설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등에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기간 중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조사업 지원과장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임·위탁에 관한 조항을 통합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5. 3. 3. 개정)」 제32조 제1항 제8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시설의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의 승인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2015. 3. 2. 이전) 또는 시·도지사(2015. 3. 3. 이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강원도 횡성군, 인제군 등 4개군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농업보조 시설물에 국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표]와 같이 시설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강원도지사의 승인 없이 채권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국고보조금 지원 시설물 담보설정 현황

시·군	사업연도	사업명	사업예산 (천원)	보 조 사업자	사업내용	근저당 설정자 (설정일자)	장관, 도지사 승인여부	
							승인	미승인
합계		7건						
횡성군 (2개소)	2013	○○○○ ○○시설	16,416	○○○	퇴비사	○○○○ (‘14.11.21)	-	○
	2014	○○○○ ○○시설	4,892	○○○	퇴비사	○○○○○ ○○○ (‘16.5.3)	-	○
평창군 (1개소)	2013	○○○○○○ ○○○○○○ ○구축	980,000	○○○○○ ○○○○○ ○○	장류숙성포 장시설 등	○○○○ ○○○○ (‘13.6.14)	-	○
양구군 (2개소)	2013	○○○○ 현대화	1,444,585	○○○	양계사 신축 등	○○○○ (‘15.7.13)	-	○
	2015	○○○○ 육성	132,770	○○○○○ ○○	세척실및 증숙기	○○○○○ (‘15.12.11) ○○○○○ (‘16.5.2)	-	○
인제군 (2개소)	2014	○○○○○○ ○시설구축	290,000	○○○○○ ○○○	홍보관 인테리어 및 기계 장비구입	○○○○ (‘14.3.5)	-	○
	2015	○○○○○ ○○○○○○ ○구축	226,000	○○○○○	농산물전처리 시설신축 및설비구축	○○○ ○○○○ (‘15.12.15)	-	○

조치할 사항 **횡성군수, 평창군수, 양구군수, 인제군수는**

국고보조금 지원 시설물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자부담 담보 재설정, 강원도지사의 사후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고, 앞으로 사전승인 없이 국고 보조금 지원 시설물이 채권 담보로 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